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의3(위반사실 등의 공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(공표 여부의 결정, 절차 및 방법 등)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,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장기 요양 기관	명칭	행복한동행 노인복지센터	기관기호	3-47830-00047
	급여종류	재가급여 (방문요양)	지정일	2015. 11. 1.
	대표자	최 현 숙	시설장	최 현 숙
	소재지	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1		
위반사실		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)		
처분내용		업무정지 60일(2026. 10. 1. ~ 2026. 11. 29.)		
공표기간		2026. 9. 21. ~ 2027. 3. 20.(6개월 간)		
공표방법		고령군청 홈페이지(고시공고) 게시		

2026년 9월 21일

고령군 